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

제출일자 : 2014. 7. 1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사유

가.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“국”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

나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추가

다.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
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, 일부개정]

3. 주요내용

가. “교육정책국”과 “행정관리국”의 명칭을 “교육국”, “행정국”으로 변경 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나.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“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” 업무 추가(안 제7조)

다.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“법제, 의회업무” 삭제(안 제7조)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(2014. 6. 2. ~ 2014. 6. 23.) 결과 : 붙임

다. 교육규제 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교육정책국 및 행정관리국”을 “교육국 및 행정국”으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“(교육정책국)”을 “(교육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제7조의 제목 “(행정관리국)”을 “(행정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제7조제9호 중 “조직·정원, 법제, 의회업무”를 “조직·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2.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③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관리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④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관리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의 설치) 인천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.	제5조(국의 설치) ---------- ---------- 교육국 및 행정국----------.
제6조(교육정책국)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	제6조(교육국) 교육국장-----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행정관리국)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	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-----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행정관리, 조직·정원, 법제, 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	9. -------- 조직·정원---------- ----------
10.·11. (생 략)	10.·11. (현행과 같음)
12.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	12.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
<신 설>	13.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관계법령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	▢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(실・국 등 기구의 설치)

【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8조(실·국 등 기구의 설치)

①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며, 실·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본청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·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연번</th><th rowspan="2">관련 조항</th><th rowspan="2">의견 내용 및 그 이유</th><th colspan="2">처리결과</th></tr>
<tr><th>반영
여부</th><th>처리이유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조례명칭
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제7조 9호 행정관리, 조직·정원 등에 관한 사항.</td><td>○정책기획관의 의회업무 이관은 조직 개편의 목적, 부서의 등을 고려 시 “의회업무”를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.</td><td>미반영</td><td>○인천교육정책의 원할한 추진과 각종 시책사업, 현안사업 등 인천시와의 이해와 협력관계는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원과 시청 간부와의 의사소통 및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의 의회팀 업무가 정책기획관에 배치되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가장 효율적임
○타 광역(특별)시 교육청의 현황을 보면
-광역시교육청에서 기획(담당)관 또는 국단위에 예산/의회/법무업무를 같이 배치하고 있음(인천만 예산과 의회업무가 별도 배치됨)
-정책기획(조정)관에 예산/의회/법무업무까지 같이 배치한 광역시 교육청은 서울·부산·대구 교육청이 있음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예산업무</th><th>의회업무</th><th>법무업무</th></tr>
<tr><td>서울</td><td>기획조정실</td><td>기획조정실</td><td>기획조정실</td></tr>
<tr><td>부산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/tr>
<tr><td>대구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td>정책기획관</td></tr>
<tr><td>광주</td><td>행정국(행정예산과)</td><td>행정국(교육자치과)</td><td>행정국(교육자치과)</td></tr>
<tr><td>대전</td><td>행정관리국(재정과)</td><td>행정관리국(행정과)</td><td>행정관리국(행정과)</td></tr>
<tr><td>울산</td><td>행정국(재정과)</td><td>행정국(행정과)</td><td>행정국(행정과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연번	관련 조항	의견 내용 및 그 이유	반영 여부	
2	조례명칭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」 제7조 9호 행정관리, 조직·정원 등에 관한 사항.	○제7조 9호 중 법제업무 삭제 -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법제업무를 정책기획관으로 이관	반영	○인천교육의 원활한 ㅈ 법제업무를 이관하는 것 판단됨.
3	조례명칭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」 제5조, 제6조, 제7조	○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반영	○학생 및 시민이 교육 “국”의 명칭을 간결